

의안번호	2204660
의 퇴 인	박홍배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30.
추 계 번호	24B4314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생태·경관보전지역 주민 등을 생태·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생물다양성 악화 방지 등을 지도·계몽하게 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22억 4,500만원(연평균 24억 4,9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개소,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주민감시원(안 제26조의2)	2,371	2,410	2,448	2,488	2,528	12,245	2,449

주: 1. 환경부에서 시행한 2023년 기준 주민감시원 사업 운영 사례를 기준으로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 2. 인건비 단가는 `25년 최저시급(10,030원/hr)에 대해 매년 약 1.7%(`25년 최저시급 상승률) 인상을 적용하여 추계
 3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4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 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6조의2(생태·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) 신설	환경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생태·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 생태·경관보전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 등을 생태·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(이하 “주민감시원”이라 한다)으로 위촉하여 지도·감시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라 주민감시원을 위촉한 환경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주민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		환경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		주민감시원의 자격, 위촉방법, 활동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(제5항)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
1	안 제26조의2(생태·경관보전 지역 주민감시원) 신설	○	환경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 및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생태·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(안 제26조의2 신설)
- 환경부에 따르면, 주민감시원 사업은 2004년 시작하여 2023년까지 실시한 사업으로 동 개정안은 주민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임
 - 2023년 기준으로 주민감시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 8개소 및 습지보호지역 26개소 등 34개 보호지역에 207명이 선발되어 운영되었음
 - － 생태·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 운영 현황은 첨부 [참고자료 1] 참조

[표 2] 환경부 주민감시원 사업 개요

- (연혁) 2004 ~ 2023
- (역할) 보호지역(생태경관보전지역 등)의 효율적인 보전·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상시 감시체계* 구축
 - * 불법행위 계도, 탐방객 안내, 쓰레기 수거, 매수토지 관리, 시설물 점검 등
- (현황) 207명 운영(34개 보호지역), 2,741백만원¹⁾ (‘23년 기준)
 - * 생태경관보전지역 8개소(227.8km²) 160명, 습지보호지역 26개소(71.9km²) 47명

자료: 환경부

- 주민감시원은 선발요건을 충족한 지원자 중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대하여 선발하고, 다른 일자리사업 등 중복참여자 등은 선발을 제한하였으며, 2022년 기준 주민감시원의 실적으로 단속·계도 7,549건, 쓰레기 수거 47,843Kg, 안내·홍보 27,256건 등이 있음²⁾
- 환경부에 따르면 동 사업 예산은 2024년 전액 삭감되었는데, 개정안에 따라 주민감시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, 기존에 운영해 온 방식으로 사업이 부활할 경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22억 4,500만원(연평균 24억 4,900만원)으로 추계됨
 - 환경부의 기존 사업 대상은 생태·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이었으나 개정안은 생태·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주민감시원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태·경관보전지역에 주민감시원 사업을 2023년 규모(160명)로 운영한다고 가정
 - 환경부에 따르면, 주민감시원 교육은 기존 공공인력(유역·지방환경청 및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) 등 활용 시 별도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
1) 환경지킴이 세부사업(환경개선특별회계, 1831-324)의 내역사업

2) 환경부 제출자료 및 환경부 2024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중 발췌

[표 3] 주민감시원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구 분	소요액(백만원)	산출내역
2026	2,371	(인건비) $160\text{명} \times 10,201\text{원/hr} \times 209\text{hr} \times 6\text{개월} = 2,047\text{백만원}$ (법정부담금) $2,047\text{백만원} \times 10\% = 205\text{백만원}$ (여비) $160\text{명} \times 125\text{천원/인} \times 6\text{개월} = 120\text{백만원}$
2027	2,410	(인건비) $160\text{명} \times 10,374\text{원/hr} \times 209\text{hr} \times 6\text{개월} = 2,081\text{백만원}$ (법정부담금) $2,081\text{백만원} \times 10\% = 208\text{백만원}$ (여비) $160\text{명} \times 125\text{천원/인} \times 6\text{개월} = 120\text{백만원}$
2028	2,448	(인건비) $160\text{명} \times 10,550\text{원/hr} \times 209\text{hr} \times 6\text{개월} = 2,117\text{백만원}$ (법정부담금) $2,117\text{백만원} \times 10\% = 212\text{백만원}$ (여비) $160\text{명} \times 125\text{천원/인} \times 6\text{개월} = 120\text{백만원}$
2029	2,488	(인건비) $160\text{명} \times 10,730\text{원/hr} \times 209\text{hr} \times 6\text{개월} = 2,153\text{백만원}$ (법정부담금) $2,153\text{백만원} \times 10\% = 215\text{백만원}$ (여비) $160\text{명} \times 125\text{천원/인} \times 6\text{개월} = 120\text{백만원}$
2030	2,528	(인건비) $160\text{명} \times 10,912\text{원/hr} \times 209\text{hr} \times 6\text{개월} = 2,189\text{백만원}$ (법정부담금) $2,189\text{백만원} \times 10\% = 219\text{백만원}$ (여비) $160\text{명} \times 125\text{천원/인} \times 6\text{개월} = 120\text{백만원}$
합계	12,245	—
연평균	2,449	—

주: 1. 환경부에서 시행한 2023년 기준 주민감시원 사업 운영 사례를 기준으로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 2. 인건비 단가는 `25년 최저시급(10,030원/hr)에 대해 매년 약 1.7%(`25년 최저시급 상승률) 인상을 적용하여 추계
 3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4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 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환경부에서 시행한 2023년 기준 주민감시원 사업 운영 사례를 기준으로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 1] 생태·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 운영인원(2023년 기준)

구분	보호지역(소재지, 지정면적)	운영인원 (명)	운영기관
생태·경관 보전지역 (8개소)	소황사구 (충남 보령, 0.121km ²)	2	금강청
	섬진강 수달서식지 (전남 구례, 1.834km ²)	2	영산강청
	고산봉 붉은박쥐서식지 (전남 함평, 8.78km ²)	1	
	거금도 적대봉 (전남 고흥, 8.365km ²)	2	
	동강유역 (강원 영월·평창·정선, 79.259km ²)	50	원주청
	하시동·안인사구 (강원 강릉, 0.234km ²)	2	
	왕피천 (경북 울진·영양, 102.841km ²)	92	대구청
	운문산 (경북 청도, 26.395km ²)	9	
	소 계	160	

자료: 환경부

[참고자료 2] 주민감시원 선발기준(‘23년 기준)

□ 우선 선발 : 선발요건 충족 지원자 중에서 취업 취약계층 우대

※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가점 부여

<취업 취약계층의 범주>

①저소득층, ②장애인, ③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④결혼이민자, ⑤여성가장, ⑥성매매 피해자, ⑦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⑧북한이탈주민, ⑨위기청소년, ⑩갱생보호대상자, ⑪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, ⑫노숙자

□ 가점 부여 :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령에서 정한 가점을 서류·면접 전형에 부여

□ 제한 사항 :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참여 불가

○ 다른 일자리사업 등 중복참여자

※ 채용 이후 중복 취업자로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

○ 반복참여자*(65세 이상 고령자, 중증장애인 제외)

*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,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(단,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% 이상 감점)

※ 중도탈락 및 이직 후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.

○ 기타 제한대상은 「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」에 준함